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악진흥법시행령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악진흥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1) 실태조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2) 실태조사 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3) 실태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1) 양성기관 지정 및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2) 양성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국악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1) 지원기관의 지정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2) 지원기관의 지정 및 취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1) 지원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05. 07. ~ 6. 17.)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중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 국악의 보전·계승에 관한 사항
3. 국악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악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마.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교육과정, 교수요원 등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

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국악의 날) ① 법 제14조에 따른 국악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경연대회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추는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국악 창작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3. 법 제13조에 따른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1. 교육과정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1) 국악 문화산업 관련 창업 희망자 교육과정 2) 국악 문화산업 경영·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3) 국악 문화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교육과정 4) 그 밖에 국악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교육과정 나. 교육과정이 연간 96시간 이상일 것 다. 교육과정이 이론 중심의 과목과 실습 중심의 과목을 모두 포함할 것 라. 시험 및 평가 등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갖출 것
2. 운영계획	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 및 예산을 확보할 것 나. 교육 대상자로부터 받는 교육비가 교육과정 운영비용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일 것
3. 교수요원 등 인력	가. 교수요원을 내부 교수요원과 외부 교수요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내부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나. 내부 교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악 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 전담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4. 교육시설 및 장비	가.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총 6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갖출 것 나. 사무실은 강의실과 분리되어야 하고, 사무수행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다. 교육에 필요한 실기장비, 교육보조재, 조명시설, 영상시설, 급수시설 등을 갖출 것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라.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경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직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4호	경고	경고	지정취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연 락 처	(044) 203 - 2735